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등 〉

■ 양문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048호)

2026.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열람차단청구권 신설(안 제2조제17호의2 및 제17조의2 신설) ..	2
2. 인터넷뉴스서비스 알림표시 의무에서 열람차단 청구 제외 등 (안 제17조의3)	10
3.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대상에 열람차단 청구 추가(안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3항)	14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양문석의원 등 10인

나. 제 출 일 : 2026. 1. 14.

다. 회부연월일 : 2026. 1.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터넷 매체에 의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와 같은 권리침해적 보도 역시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언론사의 진실하지 아니한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로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이하 “정정보도청구권등”이라 함)을 두고 있으나, 인터넷 기반 매체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진실하지 아니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는 정정보도등이 이뤄지더라도 잘못된 기사는 그대로 인터넷 상에 남아 있어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 및 검색되어 그 피해가 지속되는 등 완전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터넷 기반 매체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해당 언론사에 기사의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열람차단청구권 신설(안 제2조제17호의2 및 제17조의2 신설)

개정안은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인터넷신문사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기사의 열람차단”에 대한 정의 규정과 아울러 “열람차단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7.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7. (현행과 같음) <u>17의2. “기사의 열람차단”이란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에 의하여 보도 또는 매개된 기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차단·관리하는 것을 말한다.</u>
18. ~ 21. (생략) <u><신설></u>	18. ~ 21. (현행과 같음) <u>제17조의2(열람차단청구권) ①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인터넷신문사</u>

현행	개정안
	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u>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다.</u> 다만, 언론보도등의 내용이나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여론형성 등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언론보도등의 제목 또는 전체적인 맥락상 본문의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2.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개인의 신체, 신념, 성적 영역 등과 같은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3. 그 밖에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② 열람차단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의 요건 및 행사에 관하여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법은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제14조, 제16조, 제17조¹⁾에서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을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는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 추후보도 청구 (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함)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현행법 제18조2)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인터넷 기반의 매체가 확산됨에 따라 현행 제도만으로 해당 매체를 통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등 권리 침해적 보도가 지속적으로 노출 및 검색되는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인터넷신문³⁾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⁴⁾에 의하여 보도 또는 매개되는 기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자⁵⁾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열람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①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조정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인터넷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차단청구권”을 신설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통해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44조의2⁶⁾ 및 제44조의3⁷⁾에서 정보 삭제 및 임시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하는 조치로 당사자의 합의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등을 거치는 개정안의 열람차단과는 구분되는 측면이 있어 보임.

참고로,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대표발의,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02613호)이 발의되어 그 밖에 15건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⁸⁾와 법제사법위원회⁹⁾를 통과하였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으로 폐기된 바 있음¹⁰⁾.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복제·유통될 수 있는 인터넷 기사의 노출을 차단하여 기존의 정정보도청구 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할 수 있고, 언론중재

8)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2021. 8.19.)

9)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021. 8.25.)

10) 제21대 국회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2021년 9월 29일 국회의장의 제안과 본회의 의결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바 있음.

동 특별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기사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음.

o 기사열람차단청구권

· 현재 일방 주장만으로 차단 불가 · 사전 통제가 아닌 문제 발생 이후 구제수단 · 문제의 원기사나 이미지가 끊임없이 검색되고, 다양한 형태로 무한 복제 가능한 디지털환경에서 사회적 약자의 피해구제 한계를 보완 · 열람차단조치가 조정의 결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조정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현실에서 법적 토대 마련	vs	· 표현물의 유통자체 금지(기사삭제와 같음) · 고액소송을 동반한 열람차단청구 시 언론사가 쉽게 응하고 이로써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가 심대하게 위축될 우려 가능성 존재 · 열람차단청구 제도 도입 시 정정보도, 반론 보도 등 기존 제도의 형해화(形骸化) 우려 · 언론중재위에 과도한 권한 부여 경계
→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이 도입될 경우, 시민의 알 권리, 언론자유, 피해구제 세 가치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으며 과잉조치 가능성이 있음. → 현재 조정과 중재의 결과로써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기사열람차단의 제도화 논의가 실효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차단사유 고지, 차단 기록 공개 등 투명성 확보 조항 마련도 병행 → 청구대상매체의 성격이나 피침해법익의 성격, 법익침해의 정도, 각 청구권의 성격과 법리 및 판례의 태도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		

※ 출처 :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022. 5., p.141

위원회에서 이미 실무적으로 열람차단을 피해구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열람차단” 정의 및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임.

< 최근 3년간 인터넷 매체 대상 피해구제 건수 >

연도	전체청구	인터넷 매체 대상 청구(A)	인터넷 매체 대상 피해구제(B)	열람차단 활용 피해구제(C)	인터넷매체 청구 건 중 열람차단 비율(C/A)	인터넷매체 피해구제 건 중 열람차단 비율(C/B)
2023년	4,085건	3,207건	2,248건	471건	14.7%	21.0%
2024년	3,937건	3,186건	2,140건	663건	20.8%	31.0%
2025년	4,023건	3,269건	1,861건	492건	15.1%	26.4%
합계년	12,045건	9,662건	6,248건	1,626	16.8%	26.0%

※ 출처 : 언론중재위원회

아울러,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미 인터넷 매체에 대한 피해구제 사건 중 최근 3년간 약 26%가 기사 열람차단으로 합의되어 효과적인 합의 방안으로 활용 중으로, 열람차단청구권 신설은 위원회 조정심리 절차에서 이미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합의 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으로서, 온라인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방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임.

반면, 한국신문협회는 “열람차단청구권”은 기사 접근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언론·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고,

기사 일부를 문제 삼아 기사 전체의 열람을 제한하고, 기사 삭제와 동일한 수단인 열람차단청구권이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등 남용의 우려가 있으며, 열람차단 청구 예외 대상인 ‘공적 관심 사안 보도’의 기준이 불명확해 실효성 확보가 곤란할 수 있고, 기사의 열람차단으로 인해 후속보도가 제한되어 언론의 감시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현행 법체계만으로도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방안이 중층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열람차단청구권의 도입은 과잉입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제21대 국회에서 유사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임기만료 폐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와 충돌할 우려가 있고, 반론권 행사 기회를 차단할 우려가 있는 등 헌법적 가치의 충돌 가능성이 있으며, 추상적 표현 및 피해사실 주장만으로 기사의 열람차단이 가능하다면 과잉규제가 될 우려와 제도 남용의 위험이 존재하며,

정정보도·반론보도, 손해배상, 명예훼손 형사처벌 규정 등 피해구제 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행 제도와 중복될 수 있다는 점, 법원은 기

사의 삭제를 엄격히 제한하는데 비해, 개정안은 법원보다 완화된 요건을 제시하여 제도를 남용할 가능성이 확대되고 법원의 판단요건과 괴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아울러,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현행 제도 내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열람차단 조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바, 개정안은 진실 규명 전에 기사가 열람차단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감시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열람차단청구권의 요건이 모호하여 대부분 중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신문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인터넷뉴스서비스 알림표시 의무에서 열람차단 청구 제외 등 (안 제17조의3)

개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알림표시 의무 및 기사제공언론사의 동일 청구에 대한 피청구 간주 규정에서 열람차단 청구를 제외하고, 기사제공언론사가 청구의 수용 여부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통지하는 의무에는 열람차단 청구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론보도 청구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 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등(이하 “기사제공언론사”라 한다)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① ----- ----- ----- 청구를----- 즉시 ----- ----- 해당 청구가----- ----- ----- -----.
②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 또는 추후보도 청구가----- -----.
③ 기사제공언론사가 제15조제2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의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6조제3항, 제17조제3항 및 제17조의2제2항----- ----- ----- -----.

현행법 제17조의2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 청구, 반론 보도 청구, 추후보도 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해당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등(이하 “기사제공언론사”라 함)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제1항), 해당 통보를 받은 기사제공언론사는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항).

아울러, 기사제공언론사가 현행법 제15조제2항¹¹⁾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와 제16조제3항¹²⁾ 및 제17조제3항¹³⁾에 따라 준용되는 반론보도 청구 및 추후보도 청구의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해당 기사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3항).

개정안 제17조의3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열람차단 청구를 받은 경우, 열람차단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 의무와 기사제공언론사에 대한 통보 의무는 부여하지 아니하되(제1항 및 제2항), 기사제공언

1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등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 등의 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등이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

1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③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1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③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론사가 열람차단 청구에 대하여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의무는 부여하려는 것임(제3항).

<개정안에 따른 열람차단 청구에 관한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비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조문번호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항	정정보도청구등 알림 표시 의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 정정보도 청구 · 반론보도 청구 · 추후보도 청구	현행과 같음
	정정보도청구등 내용 통보 의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 기사제공언론사)	· 정정보도 청구 · 반론보도 청구 · 추후보도 청구	
제2항	기사제공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등 간주	· 정정보도 청구 · 반론보도 청구 · 추후보도 청구	현행과 같음
제3항	정정보도청구등 수용 여부 통지 의무 (기사제공언론사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 정정보도 청구 · 반론보도 청구 · 추후보도 청구	· 정정보도 청구 · 반론보도 청구 · 추후보도 청구 · 열람차단 청구(추가)

이는 내용의 수정 또는 반론을 전제로 하는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 추후보도 청구와 달리 정보의 확산 방지 및 접근 통제에 목적이 있는 열람차단 청구는 그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알림 표시를 할 필요성이 적어 알림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안 제17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제공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등의 내용 통보의무와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정보도청구등의 내용을 통보받은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에서 열람차단 청구를 제외할 경우, 열람차단청구권 신설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열람차단을 청구하더라도 기사제공언론사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부터 해당 청구에 대해 통보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열람차단 청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제공언론사에 대한 통보 의무 및 통보받은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열람차단 청구”를 포함하도록 하고,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 추후보도 청구에 열람차단 청구를 추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으로 안 제17조의3제1항에서 약칭하여 열람차단 청구도 제17조의3 전체 조문에 적용되도록 하되, 알림표시 의무에 대해서만 열람보도 청구를 제외하는 내용의 단서를 추가하는 입법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3.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대상에 열람차단 청구 추가 (안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3항)

개정안은 조정신청 대상에 열람차단 청구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조정신청) ① <u>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과</u>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조정신청) ① <u>제14조제1항에</u> --- --- <u>정정보도 청구, 제16조제1항에</u> <u>따른 반론보도 청구, 제17조제1항에</u> <u>따른 추후보도 청구 또는 제17조의2</u> <u>제1항에 따른 열람차단 청구(이하</u> <u>“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와</u> -----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조정) ①·② (생략)	제19조(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u>정정보도등을</u>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③ ----- ----- ----- ----- ----- ----- <u>정정보도·반론보도·</u> <u>추후보도·열람차단을</u> ----- -----.
④ ~ ⑩ (생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청구등”은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 추후보도 청구를 입법 편의상 약칭한 것으로, 개정안 제18조제1항은 “정정보도청구등”의 범위에 열람차단 청구를 추가하여 열람차단 청구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참고로, 개정안과 같이 “정정보도청구등”의 범위에 열람차단 청구가 추가될 경우, 현행법에서 “정정보도청구등”을 인용하고 있는 제20조(증거조사), 제24조(중재), 제26조(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제27조(재판), 제28조(불복절차)의 규정¹⁴⁾에도 열람차단 청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어 적용됨.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미 실무적으로 열람차단을 피해구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실효적인 피해

1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증거조사) ① 중재부는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 분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양쪽에게 조정 대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24조(중재) ① 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중재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정정보도청구등의 소) ① 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7조(재판) ①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는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28조(불복절차) ① 정정보도청구등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것 외에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구제 수단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한편,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피신청 언론사등이 조정절차에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열람차단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개정안 제19조제3항의 규정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 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80